



-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 삭제로 인한 같은 조항 제5호의 매각기준 명시
- 분수립 규정 삭제 (안 제44조)
  - 분수립 설정을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7조 삭제 개정
-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상향조정 (안 제64조)
  -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4조에서 보상금 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3배 증액
  - 개별사안에 대한 보상금도 3배 증액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석윤)

○ 본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6호)에 따른 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집행부 관계부서인 회계팀에서는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2007. 10. 19일부터 2007. 11. 9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시민의 의견을 청취한 바, 의견접수 사항이 없었습니다.

○ 주요내용 중 안 제29, 44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삭제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32조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 감면비율 적용을 중앙행정기관은 100분의 80, 기타공공기관은 100분의 50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 40조는 1981년 4월 30일 이전 건축물이 점유한 공유지에 대한 수의계약 면적조정 내용으로, 보존부적합 면적의 범위가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와 동조항 제4호가 중복되는 내용을 명확화 하기 위하여 제4호의 면적에 비해 협소한 내용을 규정한 제1호를 삭제하고 또한 2007년도 공유

재산 관리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단독주택의 경우 최대면적을 200㎡로 한정하며

○ 안 제64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4조에서 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3배 증액 함에 따라, 우리시 조례 관련조문도 제64조를 정비하는 것으로 총보상금을 1,000만원으로 하고, 제1호 내용 중 신고 필지별 200만원을 한도액을 필지별로 600만원으로 하며, 2호에서는 필지별 100만원 한도를 3배 증액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으며 법규적,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할 것입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신규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질의답변 요지

##### 가. 질의요지

“없 음”

##### 나. 답변요지

“없 음”

#### 5. 소수의견

“없 음”

#### 6. 토론요지

“없 음”

####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8. 심사보고 붙임서류

○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